

2020년 울산 「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」 대중소상생협력 공동기술개발지원 시행 연장계획(안)

(재)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라, 위기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『2020년도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사업』 대중소상생협력 공동기술개발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함.

1

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(지원목적)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위기업종 및 전·후방 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윈스톱 패키지 지원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충격 완화
- (지원규모)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규모(VAT 제외)
 -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%이상 * 지원금 : 50백만원, 기업부담금 : 5백만원

□ 지원대상

- 울산 전 지역내 본사,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위기업종(조선, 자동차) 산업 및 전후반 연관업종 기업체(필수조건)

* 검토기준 : 사업공고일 기준 울산지역내 입지 유무

* 검토기준 : 최근 3년 이내 조선, 자동차 관련 매출 실적 보유 유무(최소 1건 이상)

○ 특이사항※ 지원제외

- (중기부)2018년/2019년/2020년1차_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사업 수혜기업
- (산업부)2018년 경제협력권 산업다각화지원사업 수혜기업

-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소재 기업(우대)

* 검토기준 : 사업공고일 기준 동구 내 본사, 공장 등 보유 유무

- 퇴직자가 다수 발생으로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산업 기업체

* 검토기준 : 최근 3년 이내 조선 관련 매출 실적 보유 유무

-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사업 참여 및 성과창출 우수기업

* 검토기준 : 매출/고용증대, 조선전업률 하향조정, 품목다변화 성공 등

□ 지원제외 대상

- 부도, 휴폐업, 국세(지방세) 체납처분, 채무불이행자, 파산·회생기업, 자본전액잠식, 부채 1,000%이상(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요망), 국가R&D 참여제한 기업(대표자) 등
 - ※ 단, 회색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자(기업)은 참여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요망
-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과제명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
- 기타 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등
-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
- 2018년 경제협력권 산업다각화지원사업, 이전년도('18년,'19년) 동사업 수혜기업이 지원받은 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과제 및 프로그램으로 신청한 경우

2

지원내용

□ 유형별지원내용

- (공동기술개발형)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기술개발지원
 - 지원자격 : 위기업종(조선, 자동차) 모두 해당
 - 대중소기업이 공동 제시한 공개개발품목(붙임참조)에 한하여 공동기술개발지원
 - 반드시 공개개발품목리스트(붙임참조) 중 한가지 정하여 과제명 동일하게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하여야 함

□ 공통세부지원내용

- 기업이 당면한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(필수): 울산TP에서 제공
- 기술고도화 및 품목다변화를 위한 원스톱 기업연계지원 추진
 - 기업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세부 프로그램들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신청
 - 2개 이상 다수의 지원프로그램 신청 시 지원프로그램 간 연계성 필요
-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기술개발지도 추진(필수): 울산TP에서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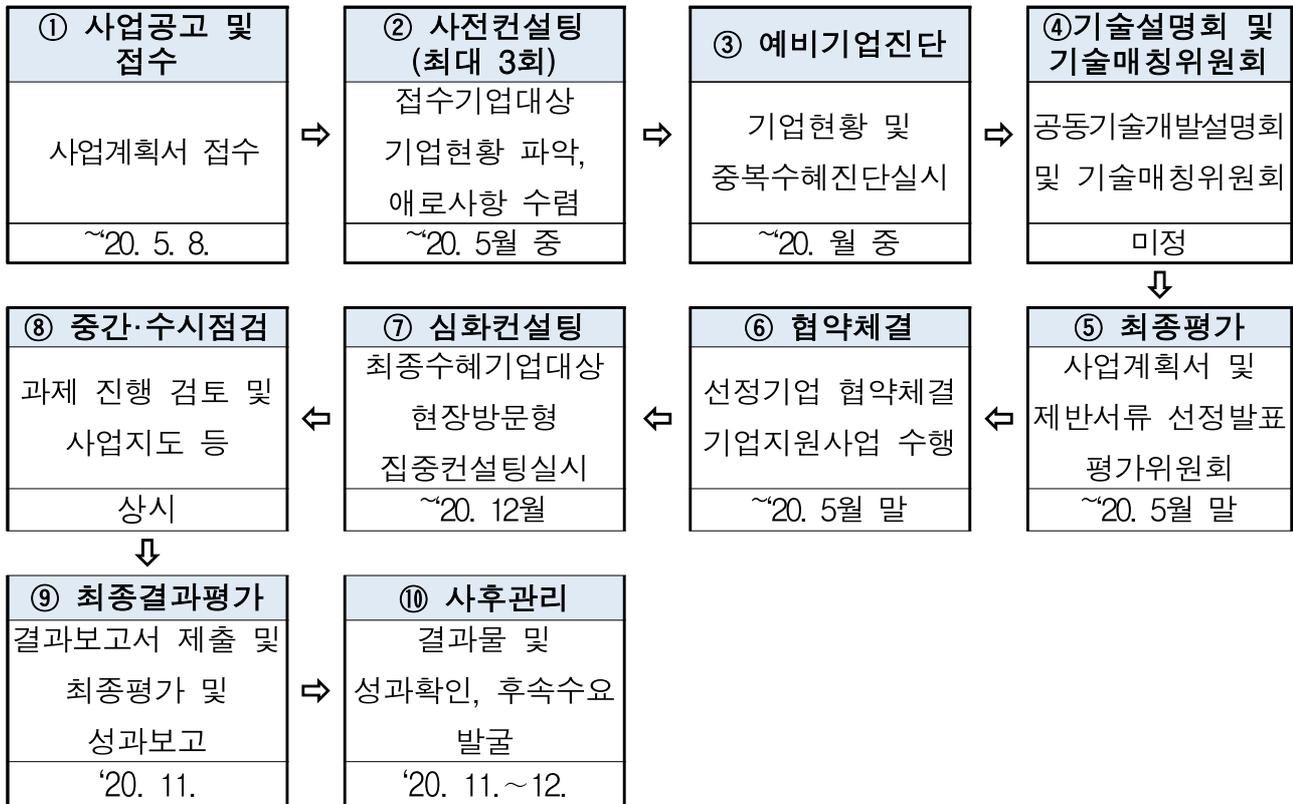
구분	프로그램	주요내용
기술지원	시제품 제작	·연구개발이 완료된 유망상품이 적시에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시제품의 설계(2D,3D모델링 및 제품디자인), 시험, 제작, 시금형, 가공 등을 지원(* 양산금형, 단순 원재료 구입 지원제외)
	인증획득	·국내·외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유망상품의 신뢰성 향상, 안전성 확보 및 성능인증, 표준화 등 제품경쟁력 확보 (* ISO인증 등 제외, 제품관련 인증만 지원 가능)
	특허획득	·개발된 기술의 상표출원, 디자인출원, 국내·외 특허출원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유망상품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(* 특허등록 제외)
사업화지원	마케팅	·(지원목적) 우수 유망상품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국외판로 개척, 마케팅 전략 수립, 기업설명회 등 마케팅을 지원 ·(지원내용) 홍보, 마케팅 전략 수립, 수출상담회·기업설명회 운영, B2B 구축 등 (* 단순홈페이지제작, 시장개척단 제외)
	전시회	·(지원목적) 유망상품의 국내·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시장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지원 ·(지원내용) 부스임차료, 장치비, 운송비, 통역비, 홍보비(홍보물제작 등)(* 항공료, 체제비, 관세 제외)
	디자인	·(지원목적) 제품의 부가가치 및 기업의 브랜드 창출 역량 강화 ·(지원내용) 브랜드 개발, 제품 디자인 설계 및 제작비용, 디자인 컨설팅, 디자인 제작 장비 지원 등
컨설팅지원	사전컨설팅 (울산TP 지원)	·(대상기업) 접수기업 및 서면평가 통과 기업 - 접수기업 모두 컨설팅 참여의사확인서 제출 - 기술애로 청취 및 즉시 해결, 제품개발 지도, 현장방문형 맞춤형 컨설팅
	심화컨설팅 (울산TP 지원)	·(대상기업) 최종 수혜기업 - 위기업종별 맞춤형 전문가 매칭 후 집중컨설팅 - 현장방문 기술자문 및 지도 및 기업기술로드맵 작성지원

* 자산성 항목(양산금형, 설비)는 지원 제외

3

추진일정

□ 공동기술개발형



* 추진절차 및 진행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

접수방법 및 제출서류, 선정기준

□ 접수기간

○ 접수기간 : 2020. 4. 23.(목) ~ 2020. 5. 8.(금) 18:00까지

인터넷 접수 후 우편 접수 또는 본부동 로비 안내데스크

*** 방문접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외**

○ 선정평가

- (최종평가) : 4월 말(최종평가방법은 추후 공지)

□ 공고 및 신청양식 확인

○ 울산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(platform.utp.or.kr)고시공고 참조

○ (재)울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utp.or.kr) 사업공지 참조
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○(STEP_1.) 온라인접수 : 울산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(platform.utp.or.kr) 접수

- 2020. 4. 23.(목) ~ 2020. 5. 8.(금) 18:00 까지 온라인 접수 필수

- 매뉴얼 : <http://platform.utp.or.kr/systemInfo/corporateManual.php>

※ 온라인 접수기간 초과시 과제접수 불가하며 사업계획서 수정 불가

※ 온라인 접수 : 파일 업로드 에러 발생 시 담당자 이메일로 파일 송부

○(STEP_2.) 서류제출 :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제출서류를 사업 담당자에게 우편제출

- 2020. 4. 23.(목) ~ 2020. 5. 8.(금) 18:00 까지 서류제출(우편 필수) 또는 본부동로비 안내데스크

□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출서류 (1번~12번까지 PDF 취합하여 파일제출 후 우편제출)

연번	제출자료	내용	비고
1	온라인 접수증(온라인 신청후 출력가능)	1부	원본
2	사업계획서 (hwp파일, 칼라PDF 반드시 각각 업로드)	각 1부	원본
3	사업자등록증 (공장소재인 경우 : 공장등록증 추가제출 요망)	1부	원본
4	01_기업개요현황 EXCEL 파일 제출 02_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체크리스트 EXCEL 제출 (업로드 또는 이메일제출)	각 1부	원본
5	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('17/ '18/ '19) (단, 전년도 결산 미완료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/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도장 반드시 필요)	1부	원본
6	중소기업확인서 (중소기업확인시스템 http://sminfo.smba.go.kr 등을 통해 발급)	1부	원본
7	4대보험가입장명부(현재 기준)	1부	원본
8	최근 3년이내 위기업종(조선, 자동차) 관련 매출 증빙자료 (세금계산서 등) (1건 이상)	1부	원본
9	기업부담금 현금출자확약서	1부	원본
10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1부	원본
11	수혜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,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1부	원본
12	참여의사확인서	1부	원본

□ 문의처 및 주소

기관명	담당자
(재)울산테크노파크	정미정 전임연구원 (052-219-8617) jmjcake@utp.or.kr

○ 주소 :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504호 기업지원실

5

유의사항

- 사업 신청·수행계획서 작성 시 기업지원에 필요한 지원기업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설립일이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함
 -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업종(업태 및 종목)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예정임
 -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누락서류가 발생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
 -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 - 선정결과는 개별로 통지하며,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
 -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협약일 이전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
 -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금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서 제외되며, 수혜기업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야 함
- ※ 반드시 기업의 기업지원 수혜이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, 고의적 누락 등이 발견될 시 지원기업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□ 선정기준

- (서면평가)총점 100점 기준, 사업수행능력 40, 기술성 30, 사업성 30,사업적합성(산업군적정성, 제재여부)
- (최종평가)총점 100점 기준, 지원적합성 20, 미래성장가능성 20, 경영평가 20, 고용창출효과 20, 전후방연관효과 및 기타기여도 10
- 평가위원 채점 합계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고득점순 지원